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26건(경고·주의·개선·권고·통보·모범·현지조치)

합계				통보													
건수	금액	인원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주의	개선	권고	일반	인사자료 (인원)	비위 (인원)	시정완료 (금액)	모범	고발	수사요청	현지조치 (금액)
26		9				3	3	4	2	2				2			10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연번	제 목	처분종류
1	□□□함 감압챔버 운영체계 개선 필요	개 선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필요	개 선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특수방제팀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권 고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 체계 개선 필요	통 보
5	국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누락 등 관리 부적정	권 고 경고·주의
6	회계연도말 유류 일괄구입 등 예산집행 부적정	경고·주의
7	□□□함 고압공기압축기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	개 선
8	수영 훈련장 수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개 선
9	위험직무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10	바로·해(海) 오프라인 진단 결과 행정규칙 이행 미흡	기관경고
11	구조대원 개인임무장비 손·망실 처리 및 재보급 업무 부적정	통 보 직권면책

2. 주요 지적사항¹⁾ : 11건

(1) □□□함 감압챔버 운영체계 개선 필요

□ 판단기준

- □□□함의 감압챔버는 잠수사의 감압 치료 및 응급 처치를 위한 핵심 장비로서, 잠수사의 안전 확보와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감압챔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도검사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기간 중에도 구조대응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필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4조(장비관리) ① 단장은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담당자는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전·후에 수시로 자체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잠수설비(SSDS 및 기압조절실을 포함한다)의 *안전도 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 문제점

- □□□함은 최근 실시된 감압챔버 안전도 검사(2024~2025년)에서 장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NO. 1·2 감압챔버 안전도검사 기간 동안 약 14개월간 □□□함의 핵심 기능인 감압 치료 및 잠수지원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상태로 운용

1) 본 요약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보고용으로서, 일부 문안이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잠수지원함의 감압챔버는 잠수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장비로서 현재 2대가 공통 시스템 연계 운영되어 1대에 대한 안전도검사 시 나머지 1대도 정상 운용이 제한되는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압지원 훈련 및 긴급 구조상황 시 잠수사 안전확보와 응급 대응 불가

□ 조치사항

- 잠수지원함 감압챔버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감압챔버 안전도 검사 또는 고장 발생 시에도 전체 잠수지원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감압챔버 독립운용(이원화)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특수구조함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개선)

(2) 청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필요

□ 판단기준

- 건축물(시설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을 실시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 제10조에 시설의 성능 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 의뢰 가능

□ 문제점

- 중특단 청사는 2층에 구조훈련장 시설 3개소(수심 15m, 6m, 1.3m) 약 2,500톤의 물이 상시 채워져 있고 각종 시설물(헬기훈련 설비 2기, 전복선박 훈련설비 2기, 파공봉쇄 훈련설비 등)이 밀집되어 있어 건물 2층에 하중 집중
- 중특단 2층 수심 1.3m, 6m 구조훈련장과 수심 15m 구조훈련장 사이 통로 바닥에 원인과 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1cm가량의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 청사 안전 관련 법령(「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부재

□ 조치사항

-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개선)

(3) 특수방제팀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라 특수방제팀과 특수구조팀은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또는 유해화학물질사고 시 현장출동·상황과악 및 특수방제 등 초동조치 임무를 함께 수행하여야 하고, 교육훈련팀은 교육·훈련 등 지원 업무 수행

□ 문제점

- 중특단 주요임무 중 하나인 특수방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별 자체 인력풀(특수구조팀+특수방제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재 특수방제팀 상황대응은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편성, 야간에 지원되는 부산해경서 예방기동계 현업 1명은 별도 특수방제 관련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 투입
 - 따라서 중·대형 해양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특수방제 상황 발생 시 파공 봉쇄, 유류 이적 등 임무 수행 한계
- 그리고 특수방제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합동훈련 감소로 파공봉쇄, 복합 화학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임무 수행 어려움
- 중특단 내 HNS 등 특수방제 관련 전문교육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 위탁교육 미비

□ 조치사항

- 중·대형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특수방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방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 (권고)

(4) 교육·훈련 체계 개선 필요

□ 판단기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4조에 특수구조단은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실시
-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4조 등에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의 사전 확인·정비, 훈련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기록물로 생산·등록하도록 규정
- 2024년도 “창단 10주년, 대형·특수구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특단 운영체계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수립, 중특단 임무 목표를 확립 후 교육·훈련 실시

□ 문제점

- ‘특수구조’관련 표준대응절차(사고유형 등) 부재, 특수구조 업무 대비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실적이 98.2% 차지

- (특수해양사고 표준대응절차 부재) 대형해양사고는 “해양 선박·항공기 사고 표준대응절차(SOP)” 상 사고유형으로 대체 가능한 반면 특수 해양사고는 표준대응절차 부재로 사고 시 대응 차질 우려
-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미분리) 2024년도 ‘종합대책’ 수립 시 부산·동해·목포해경서 구조대 업무를 특수구조단과 분리하도록 계획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미분리
- 해양 사고 표준대응절차인 “해양 선박·항공기 사고 표준대응절차(SOP)” 9개 사고유형 별 조치사항 95개 중 중특단 소관 34개 확인, 3개 유형 13개 조치사항 교육·훈련 미흡
- 2024년도 ‘종합대책’ 수립 전, 후를 기준으로 특수구조팀 교육·훈련 종목 비교 결과 ‘특수해양사고’ 특화 훈련 부재 등 ‘특수구조’ 훈련 3종을 포함한 관련 교육·훈련 미개선
- 교육훈련팀 및 특수구조팀 교육·훈련 교육자료의 관리가 미흡, 특히 화재 대응 훈련 시설 부재로 실제 훈련 미실시

□ 조치사항

- 특수해양사고에 대한 개념 재정립 후 조직,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및 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교육과정별 교재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방안을 마련 (통보)

(5) 국유재산 정기실태조사 누락 등 관리 부적정

□ 판단기준

- 「국유재산법」 제28조 등에 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재산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그 밖의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2021년부터 감사 기간 현재(2026. 4. 28.)까지 최근 5년간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누락
- 청사 준공이후 현재까지 청사(본관)에 대해 건물지번 부여 누락 및 국유재산관리 대장에 미등재
- 본관 건물과 같은 해(2021년) 준공한 중특단 소관의 부속건물(민원동)의 경우 상세주소 부여를 결락한 채 건물번호가 미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대장 정리를 누락
- 본관동과 민원동의 국유재산 취득일자(본관동 2020. 11. 15. / 민원동 2019. 12. 26.)가 실제 준공일자(2021. 5. 30.) 보다 이전 일자로 되어 있는 등 국유재산대장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등재
- 중특단 소관 민원동 건물의 경우 부산해경서에서 실제 사용중으로 향후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소요 발생시 소관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결산상 문제 발생 우려

□ 조치사항

- 누락 및 오류 등재된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 국유재산관리대장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민원동 건물에 대해 향후 활용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부산해양경찰서로 이관하는 등 국유재산을 명확하게 관리 필요 (권고)
-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처분 (경고 5명 · 주의 1명)

(6) 회계연도말 유류 일괄구입 등 예산집행 부적정

□ 판단기준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등에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으로 그 성질상 대가를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를 미리 지급 가능, 물품 제조 계약이 아닌 공급 계약은 대가 선(先)지급 불가

※ 주유소 유류 수급 ⇨ 물품(공급) 계약으로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동특대는 인근 주유소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없는 물품(구매)계약 대상인데도 유류 구매(공급)계약을

체결 후 대가 선(先)지급

- 또한, 유류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수급받을 당시에는 당일 유류가격 기준으로 대가를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 그 결과 유류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한데도 회계연도말 유류가격이 평소보다 높을 때 구매하여 가격이 낮을 때 공급받은 결과 초래

□ 조치사항

- 유류비 등 회계 연도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잔액을 회계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
- 과거 자체감사에서 유사지적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계 연도 말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처분 (경고 2명 · 주의 1명)

(7) □□□함 고압공기압축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종류 · 자격 · 인원 · 직무 범위에 맞게 배치
- 그러나, □□□함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아 선박 내에 고압가스 운용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문제점

- □□□함이 고압공기압축기(사용압력: 225~330bar / 용량 700L/min / 2대 보유)를 이용하여 실린더에 압축공기를 충전·보관·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압가스 취급시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위험성 상존
- 중특단에서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고압공기압축기 관리를 위해 「해상용 이동식 고압공기압축기 안전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 잠수지원함은 고압가스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별도의 안전관리자 및 관리규정 없이 운용하고 있어 장비 이상이나 취급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

군산 바이오 공장 암모니아 실린더 폭발 사고 사례

2025년 11월 전북 군산 소재 바이오 공장에서 외부에 보관 중이던 50kg 암모니아 실린더가 폭발하여 담장 및 인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압가스 실린더가 폭발할 경우 주변 시설물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조치사항

- 잠수지원함 고압공기압축기 및 실린더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장비 관리에 대한 교육, 위해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 (개선)

(8) 수영 훈련장 수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판단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수영조의 욕수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수질기준²⁾을 유지해야 하며, 수영장 욕수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에 따름
- 해경청 수영 훈련장(4개소)을 운영 중이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영장업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위생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음

□ 문제점

- (수질검사 미실시) ㉠을 제외한 ㉡, ㉢, ㉣에서 운영하는 수영 훈련장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훈련을 지속하는 등 수질관리 체계 미흡
 -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
- (유효 기한이 경과한 염소 소독제 보관·사용) ㉤는 소독약품인 염소 소독제를 연간 1회 대량 구매하여 유효 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사용
 - 유효 기한이 경과 한 소독약품은 유효성분의 분해·변질로 인해 소독 효과가 저하되고, 변질된 성분이 수질오염 유발

- (여과기 시스템 미사용) ㉠ 수영 훈련장은 여과기 시스템이 수질 상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설비임에도 이를 미사용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 유리잔류염소 정상 수치(0.4~1.0) → ㉠ 유리잔류염소 0.05 (정상수치 미만)

- 여과기 시스템 미사용 시 이물질 등으로 탁도 증가, 소독약품이 수조에 균일하게 확산되지 못해 세균·곰팡이 등이 증식할 우려

수영장 수질관리 부적정 언론보도

- ✓ 뉴스트리(2025. 2. 13.) "일부 공공수영장 수질관리 '엉망'... 잔류염소 기준치 초과"
- ✓ 뉴시스(2026. 1. 26.)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서 유충 발견 '긴급 휴장'"
- ✓ 헤럴드경제(2023. 10. 24.) "무인키즈 워터풀,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수질관리 엉망"
- ✓ 기호일보(2026. 4. 14.) "실내 수영장도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인천 지역사회 감염 예방 철저"

□ 조치사항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수질검사, 여과기 작동 및 소독약품 보관·사용 등 체계적으로 수영 훈련장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개선)

(9) 위험직무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부적정

□ 판단기준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2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등에 소속 직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은 이를 의무적³⁾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중특단은 2025년 소속 구조·구급 경찰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 9명이 유소견자로 진단되어 2차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중 1명이 2차 검진을 누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검진 독려 및 보고 누락 등 기타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조치사항

-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과 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대상 사후 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 철저 (기관주의)

(10) 바로·해(海) 오프라인 진단 결과 행정규칙 이행 미흡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1조에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규칙에서 정한 조문별 이행 여부 등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중 ‘해야한다’, ‘할 수 있다’를 포함한 조문을 질문 형태인 진단항목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진단 항목은 부재
 - 이번 감사에서 중특단 소관 행정규칙 대상 진단항목 64문항 생성 후 오프라인 진단 시행

□ 문제점

- 바로·해(海) 진단 항목을 이용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특단 소관 행정규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64문항 중 3개 행정규칙 8개 문항에
- 행정규칙 미이행 항목 8건 중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시설관리 운영규칙」이 6건으로 주로 점검과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 운용관 (내·내·내) 해당 여부 미인지
- 또한, 시설관리의 주체인 시설관리관(개)은 매년 시설관리계획만 수립하고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바로·해(海) 진단항목 진단 이후 행정규칙 미인지로 인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시설 안전을 위한 점검과 교육 철저 (기관경고)

(11) 구조대원 개인임무장비 손·망실 처리 및 재보급 업무 부적정

□ 판단기준

-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 등에 모든 물품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관리하고 국가 소유 물품이 손·망실된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 후 물품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신품 또는 예비보유량으로 재보급하여 구조대원들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제점

- 중특단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16점(합계금액 99,404,350원)의 장비를 분실, 그 중 3점(레일앵커, 소형캠코더, 구조실습용마네킹)에 대해 원인규명 등 자체 조사를 위한 손·망실 심의위원회 개최를 누락
- 또한, 분실된 장비들은 구조대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임무 장비임에도 분실일로부터 손·망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최장 3개월 가량 지연하였고 고가의 장비가 아닌데도 최장 22개월까지 재보급 지연(평균 5개월 지연)

□ 조치사항

- 임무수행 종료 후 장비분실이 확인 된 경우 향후 구조대원이 재임무 투입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신속한 재보급 등 후속 업무처리 철저 (통보)
- 장비 분실 이후 손망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물품관리관 보고 절차를 누락한 3건에 대해서는 관련사실 은폐나 사적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장비 분실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 (직권면책)